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 박대출・박성민・최형두

김정재 · 강민국 · 박정하

윤한홍 · 정점식 · 김태호

윤영석 · 신성범 · 이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필두로 동 분야의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이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거점을 구축하여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제시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

· 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 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제27조).

-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제29조).
-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30조).
-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운영,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 병원·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 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 터 제4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9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2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2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호)의 의결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 (産學研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우주항공복합도시"란 우주항공분야와 관련한 산업·연구·국제 교류·교육·행정·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 2. "예정지역"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항공청"이라 한다)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청사 건설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지역을 말한다.

- 4.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사업을 통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정주여건과 산업여건 등을 개선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하다.

- 1. 우주항공분야의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선도할 수 있는 자족도시(自足都市)
- 2. 우주항공분야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 주 여건을 갖춘 도시
- 3. 우주항공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교육도시
- 4. 주변 자연여건과 연계하여 우주항공 관련 전시·체험·관광이 유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주항공 문화관광도시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 제7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 환

경성 · 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 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한다.
 -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 목적 및 시행자
 - 2. 예정지역등의 위치 및 면적
 -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이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승인된 구역·지역·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예정지역등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3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4. 토석의 채취
- 5. 토지분할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 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등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예정지역: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 2. 주변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본다.

제3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등

-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

- 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 3.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 4.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의 기본방향
- 6. 재원조달 방안
- 7.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수용계획
- 2. 토지이용계획
- 3.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 4. 교통처리계획
- 5. 도시문화계획
- 6. 경관계획
- 7. 환경보전계획
-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개선 및 설치계획
- 10.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계획
- 11. 예정지역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12. 재원조달계획
- 13. 예정지역등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1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8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③ 실시계획에는 제15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 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 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8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토지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3.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 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 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 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 에 관한 협의
-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4.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5.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 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 1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 1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2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 3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

-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 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역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 경기초시설
- 4. 그 밖에 예정지역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우주항 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내에 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1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 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 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8 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공고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공고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15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라 고시된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 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용도폐지, 매각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매각, 양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4장 추진기구

-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복합도 시건설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제8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5.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 8. 제30조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9. 제40조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의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
 - 10. 제4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45조에 따른 해제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국토교통부장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 무원
- 3.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시장·군수 중 1명
-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 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원회의 위원 ·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제29조(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진단에 예정지역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제30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용) 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회계를 관리·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예정지역등 안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재원
- 3.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6. 제34조에 따른 차입금
- 7.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 8. 그 밖의 수입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입지할 우주항공청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 3. 제1항제5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제3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제40조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6. 제43조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7.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8.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 9.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 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시설을 국토교통부에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있다.
- 제34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36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 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장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 제38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 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 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 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0조(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 공분야 기술·학문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 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우주항공캠퍼스"라 한다) 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
 - 2. 제4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항공분야 국내외 연구기관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③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

- 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우주항공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 5. 그 밖의 수익금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우주항공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

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주항공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예정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개선 등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 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등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등"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 제4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

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연구기관및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 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44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구역의 입주 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입주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입지보조금
- 2. 고용보조금
- 3. 고용훈련보조금
- 4. 제품성능 검사비용에 관한 지원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제4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 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 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입주 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투자진흥지구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38조
-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7장 보칙

- 제48조(손실보상) 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

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우주항공복 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21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 라.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마.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바.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의 보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 또 는 허가 등을 받은 자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5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의 위원 ·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 제53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28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 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 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 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과태료) ① 제4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한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